의안번호	제 335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3월 일 (제 278 회)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

발 의 자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24일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335

제안연월일 : 2009. 3. 24
제안자 :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 수질이 양호한 남한강 상류지역인 충청북도의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이기에 충청북도는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우리 충청북도는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며 청정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

○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임.

○ 이에 수질오염 원인자인 경기도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충청북도는 제외되어야 함.

□ 참고사항

○ 없음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오 국회의장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이석연 법제처장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비롯한 국가중요사업에 대한 우리 충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 2,400만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고자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며 청정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투자 어느 자치단체 보다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환경부의 충주댐 상류지역 각종 개발사업 입지금지 조치에도 우리 충북도민은 오직 깨끗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개발, 관광지조성, 공장 신·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팔당댐 유역 8개 시군과 합의하여

충청북도,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지역에 대하여「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 충북도민의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은 규제를 풀고 충북과 강원지역은 새로운 규제를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목적은 하천수 수질개선이므로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오염부하량이 높은 하류지역에 한하여 시행하고,

수질이 양호하고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

류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충주댐 등 으로 인한 각종 규제정책으로 한강수계의 청정수질 보전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더 큰 희생을 강요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의무화하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한 수질오염 원인자인 경기도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충청북도 지역은 반드시 제외하여 줄 것을 155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